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4-4-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처장, 장애학생 지원센터장, 인성관장, 변호사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운영 및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한학기 1회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팀장급 직원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